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4. 21.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화덕 의원 외 8인(박정환, 배지훈, 박왕규, 안대국, 박재형, 원종진, 홍복조, 윤권근)
- 발의일자: 2021. 4. 7.
- 회부일자: 2021. 4. 9.
- 상정 및 의결: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 4. 21.)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달서문화재단이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청장과 협의를 마친 정관 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함(안 제6조제3항)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1. 4. 7. ~ 2021. 4. 19.)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조례안은 현재 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인 달서문화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임.
-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출자·출연 기관 사이 협의하도록 규정(제8조제2항)하고 지방 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과 협의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 더구나 출자·출연기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마친 후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의회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의 개정 조문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